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전부개정 2023. 12. 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교육목적)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이하 “유아”라 한다)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①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유아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직원이 유치원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교육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연한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3세가 된 유아가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연기대상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유예대상자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원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업일을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학년말방학
4. 그 밖에 원장이 정한 휴업일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유치원의 학급제는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정원)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교육 내용

제9조(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치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구

성한다.

1.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반영
3.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중심
4.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
5.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6. 그 밖에 유치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내용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1.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함
2.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음
3.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4.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함
5.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운영함
6.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함
7.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함
8.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함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1조(수업일수 등) ①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교육감의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업 운영방법)** 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②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③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④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⑥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⑦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 ⑧ 방과후 과정은 개별 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놀이, 휴식과 낮잠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⑨ 원장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 제13조(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의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원장과 교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유아 물품의 분리 보관)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원의 수업과 다른 사람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
4.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5.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7. 그 밖에 교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15조(그 밖에 생활지도)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원 협의회 등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6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한다.

제17조(출결) ① 유아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에 등원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유아가 결석, 지각·조퇴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학) ① 유아가 유치원에 재입학(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편입학(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 다만,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전학) ① 유아가 주소의 이전 등으로 전입학(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 재학생이 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원장은 이를 수용한다. 다만,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아가 주소의 이전 등으로 전출(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유아의 보호자는 원장에게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학 신청을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쳐 결정한다.

1. 유아의 안전 확인
2. 유아의 보호자와 면담
3. 관계 교직원과 협의

③ 휴학 기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이 경우 휴학하는 기간의 유아는 유치원 정원에 포함되며, 유아학비 미지급 대상이 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휴학한 유아의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 중에 복학(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을 희망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1조(퇴학) ① 퇴학[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유아의 보호자는 원장에게 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학 신청을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쳐 결정한다.

1. 유아의 안전 확인
2. 유아의 보호자와 면담
3. 관계 교직원과 협의

제22조(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면제 등)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유아에 대한 유예, 면제, 재취학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유치원규칙에 따라 해당 연령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졸업(유치원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정한다.

② 유아의 각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일 이후에 유치원에 입학하여 해당 학년도의 말일까지 재학 중인 유아의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입학일부터 학년도 말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수업료 ·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4조(무상교육) 상하초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제25조(보호자 부담 비용)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6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취학 직전 무상교육 3년을 초과한 기간의 유아교육비
2. 우유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졸업앨범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원장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6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병설한 상하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제27조(유치원규칙 개정)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23.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